

청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3345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4. E

변론 종결 2017. 9. 21.(피고 2.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1, 3, 4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흙벽돌 양철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33.06m²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7,500원과 2017. 1. 1.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6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김한성

별지